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6 - 10798호

시행일자 2024. 12. 2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002호) 공포 알림
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-5161(2024.12.23.)
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 등을 규정하기 위한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002호)이 2024. 12. 23.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개정령은 2024년12월23.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(www.mfds.go.kr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법, 시행령, 시행규칙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

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2.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002호) 1부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(각과개원의협의회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, 대한전공의협의회, 대한공중보건협의회, 대한병원장협의회, 한국여자의사회장